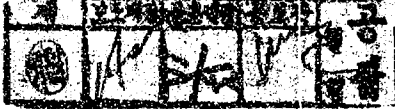


제 1360 호

1987. 5. 25



발행인: 서울특별시청 김 보 관
 편집인: 공 보 관 김 성 관
 전 화: 731-6111-3
 인 책: 서울특별시 종합발전실
 전 화: 735-3337

시 보

차 례

- 공문시행
 - 표어활동 3
- 규 칙
 - 제 2174 호 : 서울특별시경찰서로직규칙 등 개정규칙 4
- 훈 령
 - 제 647 호 :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실업대책유상운영규정 8
- 고 시
 - 제 346 호 : 사토성분등록 11

(이런계속)

공									
문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◎ 공 고

제 324 호 : 도시계획안 (공원, 학교, 도로) 공람.....	11
제 327 호 : 제 2 중전기공사면허발령지침본.....	13
제 329 호 : 고압가스제조업허가위소치본.....	13
제 332 호 : 제 2 중전기공사면허업정지침본.....	13
제 333 호 : 제 2 중전기공사면허업정지침본.....	14
제 338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공람.....	14
제 342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완료.....	15

◎ 사 령

공 문 시 행

“ 뜻 모아 하나로 힘 모아 새 계로 ”

관 인 생 략
서 울 특 별 시

공보 35210-166

(731-6111)

1987. 5. 25.

수 신 : 수신처참조

제 목 : 표어활용

’87년도 5월 호국·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도하고 조국의 독립과 나라를 수호하기 위하여 몸바쳐 싸우다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감사하고 존경하기 위한 호국·보훈의 달 표어를 다음과 같이 시달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1. 활용표어

- 나라위한 귀환희생 마음같이 되새기자
- 장한희생 값진공훈 경성모아 예우하자
- 애통하는 마음속에 다져지는 호국정신
- 드높이자 희생정신 이어받자 호국정신
- 나라지킨 희생정신 그훈으로 계승하자

2. 활 용

- 각종 발행지 및 주요산하단체 협의의 정기홍보성간행물 제작.
- 공문시행시 상단에 표시
- 현수막, 프랑카드, 입간판등 옥외홍보물 제작시 표어문구 사용등. *끝*

서 울 특 별 시 장

(공 보 관 전 결)

수신처: 서과 1-67, 시구 1-17, 석사 1-53, 서동 453.

규 칙

서울특별시 경찰서조직 규칙중 개정
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7년 5월 25일
서울특별시장 임보현

◎ 서울특별시규칙제 2174 호

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중개정규칙
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중 다음과
같은 개정한다.

제 2 조 제 1 항중 “제와 실을 둔다.”
를 “제, 실과 대를 둔다.”로하고 동
항중 제 2 호 및 제 6 호를 다음과 같
이 한다.

2. 보안과에는 보안지, 외근지, 소년
제와 방범순찰대를 둔다.
6. 대공과에는 대공 1 제, 대공 2 제,
대공 3 제와 외사제할 둔다.

제 3 조중 “(제, 실장의 배치)”를
“(제, 실, 대장의 배치)”로하고 동
조중 “제, 실장”을 “제, 실대장”

제할 소년제관 다음에 방범순찰대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별	변 장 사 부
방범순찰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보 및 기동순찰로 범죄예방 2. 다중범죄 진압 및 온갖범죄 3. 대간첩 작전 업무 4. 기타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지칭하는 업무

으로 한다.
제 4 조 제 1 항중 “과과, 제, 실”을
“과과, 제, 실, 대”로 하고 동조 제
2 항중 “과과장 및 제, 실장”을
“과과장 및 제, 실, 대장”으로 하
고 동조 제 3 항중 “과 또는 제,
실”을 “과 또는 제, 실, 대”로 한다.
별표 1 제별난중

○ 보안과 소년제의 분장사무를
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소년경찰업무계획 수립
2. 청소년 보호대책위원회의 운영
및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조 및 지도
3. 비행소년 및 불량행위 소년의
지도단속
4. 공년장 및 소년오락시설의 조
사 및 지도단속
5. 미성년자 보호법 및 아동복지
법 위반사범 지도단속
6. 소년 유희환경에 대한 실태파
악 지도단속
7. 미아, 가출인 및 무작정성경자
보호, 수배처리
8. 절인 부랑아 단속 협조
9. 소년선도보호 및 보도에 관한 업무
10. 소년(20세미만)범죄(범죄후법
우범소년)의 수사(고소, 고발포함)처리

<p>별표 2 중 청량리경찰서의 장안파출소란 다음에 북장안파출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신장안파출소 관할구역울 다음과 같이 한다.</p>		
파출소명칭	위 치	관 할 구 역
북 장 안 파 출 소	서울시동대문구 장안동 329-2	장안동 308-332, 335, 337-348, 364-368, 481번지 (장안 2 동)
신 장 안 파 출 소		장안동 333-334, 336, 349-363, 433-467, 480번지 (장안 3 동)
<p>강남경찰서의 가락파출소 관할구역중 "가락동 289 (농수산물센터)"를 삭제하고 잠원파출소란 다음에 가농파출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		
파출소명칭	위 치	관 할 구 역
가 농 파 출 소	강동구가락동 289번지	가락동 289번지 (농수산물센터)
<p>관악경찰서의 파출소명칭란중 "사당 5 파출소"를 "은평파출소"로 한다. 강서경찰서의 "신월파출소", "신월 3 파출소, 신월 2 파출소, 신월 4 파출소, 은평파출소, 신정 1 파출소, 신정파출소, 목동파출소, 목 3 파출소, 목 2 파출소, 신정 5 파출소"란을 삭제하고 파출소명칭란중 "화곡파출소"를 "화곡 2 파출소"로 "농안파출소"를 "동촌 2 파출소"로 한다. 강동경찰서의 구역울 각각 성내 1 파출소, 성내 2 파출소, 종남파출소, 천호 2 파출소의 관할 다음과 같이 한다.</p>		
파출소명칭	관 할 구 역	
성 내 1 파 출 소	성내동 110, 111, 293, 300, 316, 317, 319-322, 331, 332, 416, 417, 418-421, 423, 424, 426-449, 451-462, 464-469, 516-529, 532, 534-539, 542-545, 547-564 (성내 1 동)	
성 내 2 파 출 소	성내동 9, 11-15, 17-50, 56, 57, 62-64, 77, 78, 80-84, 86-88, 107-109, 111, 112, 116-120, 124-128, 130-140, 142-145, 147-160, 162-169, 171-180, 192-201, 203-215, 217-230, 232-235, 244-256, 258, 276-278, 281, 283-285, 287, 288, 291-293, 378-388, 396, 397, 403-405, 407-415, 500-507, 507-517번지 (성내 2 동)	
종 남 파 출 소	종남동 (종남 1, 2 동)	

파출소명칭	관할구역	
천호 2 파출소	천호동 57, 58, 60-71, 99, 101-103, 420, 421, 425-427, 429-432, 457, 461, 453-467, 469, 472 번지 성내동 52, 53, 55, 56-58, 61, 71 번지 (천호 2 동) 천호동 272-275, 279-282, 287-305, 307-313, 315, 357, 358, 359, 361-364, 366, 375, 382, 385-389, 391-393, 397-419, 421-425, 436, 437, 438 번지 (천호 4 동)	
석조경찰서 다음에 신정경찰서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강서구 목동개발지구 16-13 보편 ○ 관할구역 : 강서구 일부		
파출소명칭	위 치	관할구역
신정 1 파출소	강서구신정동 1051 의 11	신정동 1033-1050, 1014-1024, 1026-1031 번지 (신정 1 동) 신정동 943-1013 (신정 4 동 일부)
신정 2 파출소	강서구신정동 296-7	신정동 75-149, 162-225, 274-309, 311-316, 산 75-77, 80-95, 590-607 번지 (신정 1, 2 동 일부)
신정 3 파출소	강서구신정동 1032-15	신정동 224, 269, 271, 274-278, 280, 282, 283, 299, 563, 569, 571, 575, 585, 588, 592, 614, 619, 621, 624, 630, 638, 641, 643, 645, 649, 652-655, 657, 660, 662, 665, 666, 669, 673, 686, 688, 689, 692, 694, 696-700, 703, 704, 707, 709, 710, 714, 715, 724-730, 733, 749, 751-776, 781, 794, 804, 812, 840, 1031, 1032, 1147 의 1-12, 1199 의 1-14 호, 1200 의 1-14 호, 산 44, 46, 61, 114, 115, 129-166, 20, 27 번지 (신정 3 동)

파출소명칭	위 치	관 할 구 역
신정 5 파출소	강서구신정동 916 의 13	신정동 872-942 번지 (신정 5 동)
목동 파출소	강서구 목동 409 의 74	목 동 404-406, 408-409, 808 번지 (목 1 동 일부)
목 2 파출소	강서구 목동 553-31	목 동 41, 42, 131, 199, 222, 230-233, 520, 536-538, 540, 541, 557, 745-752 번지 (목 2 동 일부)
목 3 파출소	강서구 목동 330-8	목 동 308, 318, 324, 330, 351, 351, 354-355, 361, 701-706, 709-748 (목 3 동)
목 5 파출소	강서구 목동개 밭지구 4-3보리	목동 163 의 나호 (목 4 동) 목동 191, 901-904, 911-913 (목동신기자재 1-6 단지 목 1, 2 동 일부)
신월 파출소	강서구신월동 132-3	신월동 90-118, 120-141, 143-146, 217-245, 304, 422-424 번지, 산 1, 3, 5-7, 10, 26, 32-33, 35-38, 40, 43-45, 50-54, 61, 71, 72 번지 (신월 1 동) 신월동 1, 3-13, 15-29, 50-59, 71-88 번지 (신월 5 동 일부)
신월 2 파출소	강서구신월동 608-12	신월동 445-448, 451-458, 460-470, 472-475, 477-485, 487-495, 500-513, 602-604, 606-612, 614-615, 산 111 의 2, 6, 7 호 112 의 24 호, 113 의 3, 7-10, 14-17 호, 117-12, 32-37 호, 122 의 166, 192 호 (신월 2 동) 신월동 548-586, 588-590, 592-601 산 139 의 1 호 (신월 6 동)
신월 3 파출소	강서구신월동 49 의 11	신월동 30-49, 102 의 1-4 호, 142, 147-207, 213-214 번지 (신월 3 동)
신월 4 파출소	강서구신월동 425-2	신월동 410-444, 514-547, 331-360, 369, 376 산 153 번지 (신월 4 동)
부 칙		
이 규칙은 1987. 5. 1 일부터 시행한다.		

훈 령

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일해교육상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87년 5월 25일

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

◎ 서울특별시훈령제 647 호

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일해교육상운영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양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에게 시상하는 일해교육상(이하 "교육상"이라 한다.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) 교육상은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(이하 "교육원"이라 하며 "서울특별시 소방학교"를 포함한다.)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1 명에게 수여한다.

1.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으로서 교육기간이 2주이상의 교육훈련 평가가 실시되는 과정
2. 전문교육과정 중 교관교육과정
3. 간부양성과정등 3개월이상의 장기교육과정

제 3 조 (시상시기 및 시상금등) ① 교육상은 교육원장이 매교육과정의 수

표시에 시상한다.

② 수상자에게는 별표규정 서식의 상장 및 시상금을 수여한다.

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한 저축통장으로 지급한다.

1. 교육인원이 50명이하인 교육과정은 30만원
2. 교육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은 50만원
3. 간부양성과정등 3개월이상인 장기교육과정은 100만원

④ 교육원장은 수상자의 명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기금설치) ① 제 3조에서 규정한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"일해교육상 기금"(이하 "기금"이라 한다.)을 설치한다.

② 기금설치 당시의 기금액은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은 242백만원 서울특별시 소방학교는 37백만원으로 한다.

③ 시상금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시상금의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 5 조 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대통령 특별지원금
2.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

제 6 조 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교육원장이 운용·관리한다.

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되며, 수익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<p>③ 기금은 세입, 세출의 현금 ("일반교육상 기금")구좌로 관리한다.</p> <p>④ 교육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 을 임명한다.</p> <p>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, 기금관리 에 필요한 기록에 랑증서, 지급영부 현금출납부등을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제 7 조 (기금운용계획) ① 교육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,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금의 운용구도 및 운용방법 2. 당해년도 사상금 지급금액 및 인년도 지급계획 3. 사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사항 4.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<p>제 8 조 (교육상 운용위원회) ① 교육원 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, 관리를 위하여 교육상 운용위원회(이하 "위 원회"라 한다)를 설치, 운영 하여 야 한다.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 인이내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며 위 원장은 교육원장이 되고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간부급 공무 원중에서 임명한다.</p> <p>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. 사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	<p>3. 기금의 적립 및 운영과 결산 에 관한 사항</p> <p>4.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</p> <p>제 9 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</p> <p>② 정기회는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 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</p> <p>③ 회의는 위원 2/3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.</p> <p>제 10 조 (기금액조정 및 감독) ① 서울특별시장은 교육과정의 증감등 교육운영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육기관의 기금액을 상호 증감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서울특별시장은 교육원의 기금운 용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제 11 조 (규칙) 이 규정에서 정한 사 항이외에 교육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(시행일) 이 규정은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
---	--

상 장 문 단 및 규 격

(별표)

41.5 cm

28.5 cm

3 cm

1.5 cm

재 호

日 海 教 育 賞

所 屬

職 級 姓 名

위 사람은 ○○教育訓練課程을 優秀한 成績으로
履修하여 他的 模範이 되므로 이에 賞狀과
抽賞金을 授与함.

年 月 日

○○公務員 教育院
院長 ○ ○ ○

1 cm

1. 상장의 지면도색은 지색(담황색)으로 한다.
2. ㉠은 교육기관 자체의 취장을 금학으로 양자 균양을 세긴다.
3. ㉡의 배두리선은 금학색으로 한다.
4. ㉢의 중간선은 선을 표시하지 않고 접을수 있도록 한다.

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100px; margin: 0 auto; padding: 2px;">고 시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10px;">◎서울특별시고시제 346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10px;">사료 성분 등록</p> <p style="margin-top: 10px;">사료관리법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 여 사료성분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</p> <p style="margin-top: 10px;">4. 사료성분등록사항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5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등록번호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사료의종류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사료명칭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성분명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성분량 (%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2 - 5</td> <td row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발효사료</td> <td row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이스트질슈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조단백질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4 % 이 상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조섬유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 % 이 하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조회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 % 이 하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4 % 이 하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등록번호	사료의종류	사료명칭	성분명	성분량 (%)	2 - 5	발효사료	이스트질슈어	조단백질	14 % 이 상	조섬유	5 % 이 하	조회분	5 % 이 하	수분	14 % 이 하	<p style="margin-top: 10px;">이 고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20px;">1987.5.25. 서울특별시장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업체명 : 김한옥산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24-2 대표자 : 구 본 현 			
등록번호	사료의종류	사료명칭	성분명	성분량 (%)																
2 - 5	발효사료	이스트질슈어	조단백질	14 % 이 상																
			조섬유	5 % 이 하																
			조회분	5 % 이 하																
			수분	14 % 이 하																
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100px; margin: 0 auto; padding: 2px;">공 고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10px;">◎서울특별시공고제 324 호</p> <p style="margin-top: 10px;">도시계획안(공원, 학교, 도로) 공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시계획법 제 15 조의 2 및 같은 법시행령 제 14 조의 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안을 다음과 같 도시계획안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안 	<p style="margin-top: 10px;">이 공고하고 아래장소에서 14일간 일반인 토지소유자에게 보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람. 공람기간 : 87.5.25-87.6.7 (14일간)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20px;">1987.5.25. 서울특별시장</p>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5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공원번호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공원종류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공원명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위 치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면적(㎡)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정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.17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자연공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판악산 자연공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판악구 신림, 남현 봉천동, 구로구 시 흥, 독산동, 경기도 시흥파천면인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,609.51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		구분	공원번호	공원종류	공원명	위 치	면적(㎡)	비 고	기정	.17	자연공원	판악산 자연공원	판악구 신림, 남현 봉천동, 구로구 시 흥, 독산동, 경기도 시흥파천면인데	20,609.51	
구분	공원번호	공원종류	공원명	위 치	면적(㎡)	비 고														
기정	.17	자연공원	판악산 자연공원	판악구 신림, 남현 봉천동, 구로구 시 흥, 독산동, 경기도 시흥파천면인데	20,609.51															

17-12

제 1360 호 시

보 1987.5.25

구분	공원번호	공원종류	공원명	위치	면적 (㎡)	비고	
변경	17	자연공원	관악산 자연공원	관악구 신림, 남현 봉천동, 구로구 시 흥, 독산동, 경기도 시흥과천면일대	20,558,204	학교용지결 경대 따라 공원해제 면적: 50,857 ㎡	
나.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신설안							
구분	시설명	위치	규모 (㎡)	비고			
신설	학교용지	구로구 독산동 산 12-2 일대	13,984				
"	"	구로구 독산동 산 8번지 일대	13,712				
"	"	구로구 독산동 산 204번지 일대	13,370				
신설	학교용지	구로구 시흥동 산 126-1번지 일대	11,810				
다.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신설 및 변경안							
구분	등급	유형	폭원(m)	연장(m)	시점	종점	비고
신설	소로	3류	6-9	100	구로구 시흥동 424-2	시흥동 산 71-2	
기정	소로	3류	6	98	구로구 개봉동 165-2	개봉동 166-2	
변경	"	"	4.5-6	98	"	"	일부구간 폭원축소및 위치변경
기정	소로	2류	8	260	구로구 가리봉동 115-2	가리봉동 110-7	
변경	"	3류	6	260	"	"	폭원축소
신설	소로	2류	8	198	중로 1류 12호	천왕동 30	시공폭 2m 포함

<p>◎서울특별시공고제 327 호</p> <p>제 2종전기공사업면허영업정지처분</p> <p>전기공사업법 제 29조 제 2항 제 3 호 규정에 의거 아래 제 2종 전기공</p>		<p>사업 면허소지 업소에 대하여 면허를 영업정지처분 하였고 동법 제 42 조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.</p> <p>1987.5.25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					
아		때					
면허번호	상 호	대표자	소재지	처분사항	처분사유		
762	세하전기	허 권	내림동 818-12	영업정지 2개월	1년연속		
				87.5.19-87.7.18	비보고		
<p>◎서울특별시공고제 329 호</p> <p>고압가스제조업허가취소처분</p> <p>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9조의 규정</p>		<p>에 의거 고압가스 제조업허가를 취소 처분 하였고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</p> <p>1987.5.25.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					
의 가	업	종	상 호	소 재 지	대표자	허가취소일차	유 및 관련
번호							법규
4-4	고압가스	유림산업사	성동구	강북로	87.5.15	(무단취업)	고압가스 안
	(냉동)제		성수 1가				전관리법
	조		656				제 9조
<p>◎서울특별시공고제 332 호</p> <p>제 2종전기공사업면허영업정지처분</p> <p>국제집수법 제 7조의 규정에 의거</p> <p>아래 제 2종 전기공사업 면허업체에</p>		<p>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하고 전기공사업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.</p> <p>1987.5.25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					

17-14

제 1360 호서

도 1987.5.25

면허번호	업종명	소재지	대표자	처분사항	사유
제 602 호	중앙 건축공사	강서구동촌동 10-13	정수원	영업정지 2월 (87.5.20-7.19)	국제채널
<p>◎서울특별시공고제 333 호</p> <p>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영업정지처분</p> <p>전기공사업법 제 29 조 제 2 랑 3 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 2 종 전기공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아 래</p>			<p>업종의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하였 기 동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7.5.25 서울특별시장</p>		
면허번호	업종명	대표자	소재지	처분내용	처분사유
666	명성 전기공사	유준중	신월동 601-21	영업정지 2월 (87.5.18-7.17)	전기공사업법 제 29 조 제 2 랑 3 호 위반
<p>◎서울특별시공고제 338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공람</p> <p>1. 서울특별시가 결정 지지승인한 다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 계획사업을 시행코져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랑 및 동시행령 제 27 조 2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한다.</p> <p>2. 토지(물건)소유자와 이해관계 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다.</p>			<p>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알음한다.</p> <p>3. 관제도시는 도봉구청 본읍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 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,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를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7.5.25 서울특별시장</p>		

공 랑 요 지

가. 사업개요

사업시행지	사업종류및 사업명칭	규 모	착 공	준 공	결정고시 일 자	지적고시 일 자
상문1동 304-8 외 8필지	도시계획사 입(도로) 상문1동304 도로건설공사	B=5m L=196m	87.5	88.12	서울고시 제 89호 72.6.30	서울고시 제 89호 72.6.30

나. 사업의 시행자: 서울특별시장
 다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(물신)
 조사: 별첨
 라. 위키도 및 계획평면도: 생략
 마. 공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 바. 공람장소: 도봉구청 토목과 및
 건설관리과
 사. 기타 상해한 사항은 도봉구청
 토목과에 문의하시기 바람.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342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완료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62 호 (85. 4. 13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766 호 (85. 11. 8)로 도시계획사업(학교)

시행허가 변경된 서대문구 신촌동 131번지 일대의 도시계획 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5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다음과같이 완료 공고한다.
 2.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7.5.25.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1번지 일대

나. 사업의종류: 도시계획사업(학교)
 명칭: 연북대학교 부속의료원
 암센터 및 종합원 증축
 명칭: 학생회관 및 부속병원
 부대시설 확충

다. 사업시행면적: 807,019㎡

라. 사업규모				
구 분	건축면적 (㎡)	연면적 (㎡)	구 조	비 고
입 선 타	92.24	2,217.6	지상 7층	
재 활 원	1,332.18	8,427.74	지하 1층·지상 6층	
알 련 관	1,052.06	1,695.67	지하 1층·지상 3층	
원 두 파	83.16	249.48	지상 3층	
학 생 회 관		1,692	지하 1층	
광 해 원	141.59	199.31	지하 1층·지상 1층	
계	2,701.23	14,431.8		

다. 사업시행자 : 서대문구신촌동 131번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여사장 이원환
 바. 사업기간 : 85.9.2 - 87.4.30
 사. 준공도면 : 별첨 (생략)

사 령	
◎ 1987년 5월 20일자 동대문구 지방행정주사보 강동구 관악구 지방행정주사보 총합운동장 관리사업소	영재 151호 우 은 출 최 용 선
◎ 1987년 5월 22일자 운수 2과 지방행정주사보 원예의하여 그 직을 면함	영재 154호 최 용 선
◎ 1987년 5월 23일자 관악구 보건소 지방보건의사보 서울지방검찰청 파견 (87.5-88.5.14)	영재 155호 윤 영 진
◎ 1987년 5월 26일자 도봉구 지방전속기원 용무과 파견 (87.5.26-87.12.31)	영재 156호 고 세 근

공 무 국 의 여 행 경 령 사 합						
여 행 자			무 직	여 행 국	기 간	경 비
소 속	직 위 (직급)	성 명				
세종문화회 관	무대공연담당 장관 (별정 4 급)	박위민	하저유니버시아드 대회 홍보사절단 과전접의	유 고	'87.5.19- 6. 7 (13일간)	사 비
표 통 국	운수 1 과장 (서기관)	재태룡	'87 세계지하철총 회 참석	스위스, 프랑스, 미 국	87.5.22- 5.31 (10일간)	지하철 공 사 부 담
산 업 경 제 국	국 장 (이사관) 지방행정 사무관	김재량 권희소	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및 제 도개선여 관한 자료수집	프랑스, 영 국, 화 란	87.5.25 6. 3 (10일간)	사 비
서울특별시청						